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주가정법원 및 완주군법원 설치〉

■ 안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280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병 섭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전주가정법원 설치	3
2. 완주군법원 설치	10
참고자료 1. 비용추계 결과	22
참고자료 2. 시·군법원 관할인구 수 현황	2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안호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 7.

3. 회 부 일 : 2025. 1.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가정해체, 가정폭력, 청소년 비행 등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도 증대하고 있어 위 사건을 전담하여 다루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전라북도를 관할하는 전주지방법원의 경우 2021년 1,587건, 2022년 1,563건, 2023년 1,436건의 가사소송 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이 설치된 타 지역에 비해 인구대비 월등히 많은 수요임. 별도로 설치된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가사·소년사건 등에 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1994년 개정을 통해 전국에 시·군법원을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고, 1995년 9월 1일부터 시·군법원이 해당 관할구역의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당시 완주군은 군청을 전주시에 두고

있어 군법원의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었음.

현재 완주군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법원이 없는 지역으로 완주군청이 전주시에서 완주군으로 이전하였음에도 시·군 법원이 없어 주민들이 전주지방법원까지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해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음.

이에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전라북도 지역주민이 가사·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완주군에 시·군법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관할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

III. 검토의견

1. 전주가정법원 설치

가. 개정안의 내용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와 같이 규정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16. 12. 27.>

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7.>

1.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4
3.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5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
5. 각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6. 항소사건(抗訴事件) 또는 항고사건(抗告事件)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8
7.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
8.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0

- 개정안은 이 중 [별표 1]을 개정하여 전주가정법원 본원 및 군산지원·정읍지원·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하고, [별표 3]을 개정하여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의 소년보호사건을 관할하고 있는 전주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규정을 조정하며, [별표 5]를 개정하여 전주가정

법원 본원 및 군산지원·정읍지원·남원지원의 관할구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및 개정내용>

개정대상	개정내용
[별표 1] 각급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 전주가정법원 본원 및 군산·정읍·남원지원 설치
[별표 3]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 전주지방법원 관할구역 조정
[별표 5]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 전주가정법원 본원 및 군산·정읍·남원지원 관할구역 규정

- 개정안에 따른 신설 전주가정법원 본원 및 군산지원·정읍지원·남원지원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으며, 시행일은 2029년 1월 1일로 규정됨.

<신설 법원의 소재지, 관할구역 및 시행일>

법원명	소재지	관할구역	시행일
전주가정법원	전주시	전주시·김제시·완주군·임실군·진안군·무주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전라북도	2029년 1월 1일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군산시	군산시·익산시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	정읍시	정읍시·부안군·고창군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	남원시	남원시·장수군·순창군	

나. 검토의견

- 가정법원은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등을 처리하는 전문법원임.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 등의 가사 사건과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행하는 소년보호사건을 주로 담당하나, 가정폭력범죄나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행위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처분이나 피해자 보호명령을 행하는 가정보호사건이나 아동보호사건도 담당하고 있음.
- 우리나라 최초의 가정법원은 서울가정법원으로 1963년 10월 1일 설치되었으며, 2011년 4월 11일 부산가정법원, 2012년 3월 1일 대전·대구·광주가정법원, 2016년 3월 1일 인천가정법원, 2018년 3월 1일 울산가정법원, 2019년 3월 1일 수원가정법원이 각각 설치되었으며, 2025년 3월 1일에는 창원가정법원이 개원할 예정임.

가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동급의 법원으로,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의 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지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¹⁾.

- 개정안은 현재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전주시 등 전북 특별자치도 지역에 전주가정법원 본원 및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하려는 것임.

1) 법원 홈페이지, 사법부 소개>>법원의 조직>>전문법원, <https://www.scourt.go.kr/judiciary/organization/specialized/index.html>, 2024. 8. 18. 최종 확인

-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의 가사사건 등은 전주지방법원 본원과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에서 담당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가정법원 및 그 지원은 같은 지역에 소재하므로, 개정안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주민들의 가사사건 및 소년보호사건 등에 대한 사법 접근성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가정법원은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등의 처리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최근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가정법원을 확대 설치한다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주민들에게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적절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가정법원을 추가 설치할 것인지 여부 및 가정법원 및 그 지원을 어디에 얼마나 더 설치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경기 북부지역, 충청북도 지역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법원의 조직·인력·시설 등 사법자원의 활용 및 배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현재(2024. 12. 31. 기준)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전주지방법원 외에도 의정부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제주

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은 2029년 3월²⁾ 창원가정법원이 개원 예정이므로 제외)이 가정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관할 사건 수(가사사건 등 가정법원 관할 기준)를 살펴보면, 전주지방법원(5,012건)에 비해 의정부지방법원(8,714건)의 사건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4년 가정법원 사건 수 현황>

(단위: 건, 2024. 12. 31. 기준)

연번	법원명	합계	가사 단독	가사 합의	가사 항소	가사 비송	가정 보호	소년 보호
1	서울가정법원	36,192	6,755	836	368	19,234	2,550	6,449
2	수원가정법원	19,599	2,402	188	458	6,291	1,605	8,655
3	인천가정법원	16,224	2,206	88	295	6,487	1,203	5,945
4	부산가정법원	13,743	2,207	115	222	7,465	1,041	2,693
5	대구가정법원	13,714	2,045	163	205	5,728	976	4,597
6	대전가정법원	10,913	1,318	82	208	3,478	868	4,959
7	광주가정법원	9,305	1,359	41	155	3,582	473	3,695
8	의정부지방법원	8,714	808	30	209	2,861	462	4,344
9	울산가정법원	6,307	974	30	171	2,191	334	2,607
10	창원가정법원	6,054	1,160	171	96	2,756	461	1,410
11	전주지방법원	5,012	755	78	66	2,201	214	1,698
12	청주지방법원	4,914	634	27	91	1,803	189	2,170
13	제주지방법원	3,793	668	11	95	1,963	546	510
14	춘천지방법원	2,633	280	25	66	1,013	134	1,115

주) 셀 음영은 가정법원 미설치 지역, 창원가정법원은 2029년 3월 설치 예정

자료: 법원행정처 제출

2) 당초 2025년 3월 1일 개원 예정이었으나, 2029년 3월 1일로 연기되었음

- 또한, 개정안은 전주가정법원 설치 시행일을 2029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당수의 경우 신규 법원의 개원일은 법관의 인사이동 일정 등을 고려하여 3월 1일로 규정하였던 점(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2026년 3월 1일, 인천고등법원 2028년 3월 1일, 세종지방법원 2031년 3월 1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2024. 1. 18.)에 따라 전주가정법원의 관할구역 규정에 사용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개정안의 전주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 설치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279억 3,600만원(연평균 55억 9,700만원)으로 추정됨. 이는 전주가정법원 본원만 청사를 신축하고, 나머지 지원들은 기존 사무실을 재배치하여 사용하며, 판사 정원은 변동 없이 공무원만 20명 순증된다고 가정한 것임(참고자료 1. 비용추계 결과 참조).

다. 관계기관 의견

- 법원행정처는 가사사건 등에 대한 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가정법원을 순차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주는 의정부, 청주, 춘천, 제주와 함께 아직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못한 지역으로서, 가사·소년 등 사건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임.

다만,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 전국 가사사건 관할의 합리적 배분,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청사 공간 및 예산 확보 가능성,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못한 타 지역(의정부, 청주 등)과의 형평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설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2. 완주군법원 설치

가. 개정안의 내용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와 같이 규정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설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支院)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16. 12. 27.>

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7.>

1.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4
3.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5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
5. 각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6. 항소사건(抗訴事件) 또는 항고사건(抗告事件)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8
7.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
8.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0

- 개정안은 이 중 [별표 2]를 개정하여 전주지방법원 완주군법원을 설치(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하는 한편, [별표 7]을 개정하여 전주지방법원 완주군법원의 관할구역(관할구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일은 2029년 1월 1일로 규정됨.

<개정대상 및 개정내용>

개정대상	개정내용
[별표 2] 시·군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전주지방법원 완주군법원 설치
[별표 7]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전주지방법원 완주군법원 관할구역 규정

<신설 법원의 소재지, 관할구역 및 시행일>

구분	법원명	소재지	관할구역	시행일
신설	전주지방법원 완주군법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29년 1월 1일

나. 완주군법원 신설에 따른 영향 분석³⁾

1) 관할인구 및 예상 사건 수

- 개정안에 따라 완주군법원이 설치되는 경우 완주군법원의 관할 인구를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음. 2024년 12월 31일 기준 완주군법원의 관할인구는 9만 9,279명으로, 현재 전주지방법원 본원 관할 인구(88만 8,335명)의 약 11.2%에 해당함.

<개정안에 따른 완주군법원의 관할구역 및 관할인구>



법원	관할구역	면적(km ²)	관할인구(명)
전주지방법원	전주시,김제시,완주군,임실군,진안군,무주군	3,591	888,335
김제시법원	김제시	545,8	80,635
진안군법원	진안군	789,1	24,161
무주군법원	무주군	632,1	23,032
임실군법원	임실군	597,2	25,577
완주군법원	완주군	821,4	99,279

-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전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건 중 완주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 사건 등 시·군법원 사건(「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⁴⁾)은 신설되는 완주군법원에서 처리될 것임.

3) 법원행정처 분석·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4) 「법원조직법」 제34조(시·군법원의 관할) ① 시·군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할한다.

1.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2. 화해·독촉 및 조정(調停)에 관한 사건
3.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

- 인구비율(신설 완주군법원의 관할인구는 기존 전주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인구의 약 11.2%)을 기준으로 완주군법원의 사건 수를 추정해보면, 2024년 12월 31일 기준 전주지방법원 본원의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사건 등은 총 2만 6,419건이므로, 완주군법원의 사건 수는 이의 11.2%에 해당하는 2,959건으로 예상됨.

<신설 완주군법원 사건 수 추정>

구분	소액사건	조정사건	전자독촉	즉결사건	계
전주지방법원(현재)	5,389	1,851	18,365	814	26,419
전주지방법원 (완주군법원 제외 시)	4,785	1,644	16,308	723	23,460
완주군법원	604	207	2,057	91	2,959

- 신설 완주군법원의 관할인구(9만 9,279명) 및 사건 수(2,959건)를 다른 시·군법원과 비교해보면,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관할인구 10만 7,383명, 사건 수 3,205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관할인구 9만 8,870명, 사건 수 1,635건),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관할인구 9만 8,143명, 사건 수 2,348건) 등과 유사한 수준임.

<다른 시·군법원과 관할인구 및 사건 수 비교>

구분	인구수 (명)	면적 (km ²)	사건 수					합계	소속법원	법관주 여부
			소액	조정	전자 독촉	민사 독촉	즉결			
칠곡군법원	107,383	451	744	18	2,017	138	288	3,205	대구지법	상주
완주군법원	99,279	821.4	604	207	2,057	0²⁾	91	2,959	전주지법	
영주시법원	98,870	670.2	334	9	1,031	132	129	1,635	안동지원	봉화군 법원 겸임
영천시법원	98,143	919.2	454	11	1,544	104	235	2,348	대구지법	청도군 법원 겸임

2) 사법 접근성

- 현재 완주군의 전주지방법원까지의 사법 접근성을 다른 시·군법원 미설치 지역의 관할법원까지의 사법 접근성과 비교해보면,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완주군의 사법 접근성이 다른 시·군법원 미설치 지역(계룡시, 증평군, 신안군 등)의 사법 접근성에 비해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다른 시·군법원 미설치 시·군의 관할법원까지의 접근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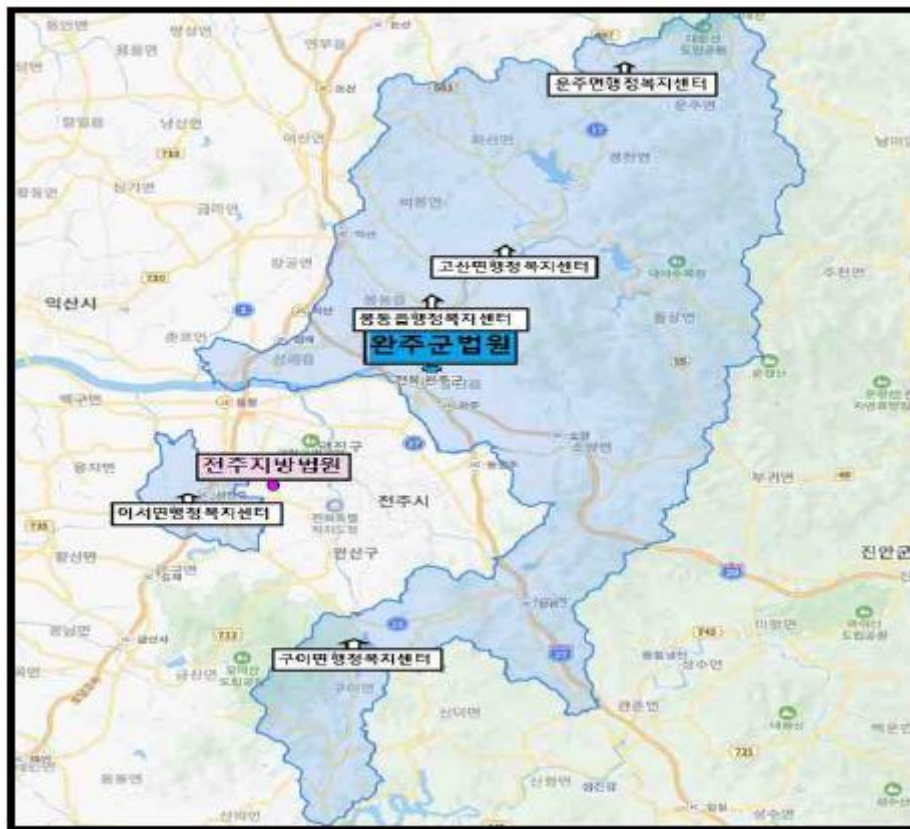
시·군청	관할법원	시청 및 군청↔관할법원		
		거리(km)	시간	
			자동차	대중교통
계룡시청	논산지원	34	39분	1시간 31분
증평군청	청주지방법원	27.3	34분	1시간 43분
신안군청	목포지원	11.5	20분	1시간 22분
완주군청	전주지방법원	18.4	26분	1시간 45분
평 균		22.80	29.75분	1시간 35분

- 완주군법원이 완주군청 인근 부지에 신설된다고 가정하고, 완주군의 각 거점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주지방법원과 신설 완주군법원까지의 사법 접근성을 비교해보면,

완주군청 인근 지역 주민들(봉동읍, 운주면, 고산면 일대)의 사법 접근성은 개선(봉동읍: 18.3km→6.1km, 운주면: 41.4km→27.5km, 고산면: 25.4km→11.6km)되나, 전주지방법원 인근 지역 주민들(이서면, 구이면 일대)의 사법 접근성은 악화(이서면: 7.1km→24.7km, 구이면: 18.8km→35.2km)되는 것으로 나타남.

<완주군 각 거점지역에서 전주지방법원/완주군법원 접근성 비교>

출발지	인구(명)	도착지	시간		거리 (km)	도착 지	시간		거리 (km)
			자동차	대중교통			자동차	대중교통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24,204	완주군 법원	11분	35분	6.1	전주 지법	28분	1시간 51분	18.3
이서면 행정복지센터	15,106		23분	2시간 7분	24.7		13분	50분	7.1
구이면 행정복지센터	5,453		32분	1시간 55분	35.2		24분	1시간 42분	18.8
운주면 행정복지센터	1,863		29분	현재 없음	27.5		50분	2시간 50분	41.4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4,286		14분	46분	11.6		35분	1시간 56분	25.4



3) 완주등기소 예상 등기건수

- 「법원조직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각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등기소를 둘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은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별표]
{등기소의 명칭과 관할구역표}에 의해 정해짐.

법원조직법

제3조(법원의 종류) ②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支院)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현재(2024. 12. 31.) 전국에 설치된 등기소는 111개[등기국 11개(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각급 법원 등기과(계) 46개 포함시 총 168개], 시·군법원은 99개이며, 모든 시·군법원에는 등기소가 함께 설치되어 있음⁵⁾.

○ 이에 완주군법원 신설 시 완주등기소가 함께 신설된다고 가정하고 완주등기소의 예상 등기건수를 추정해 보면, 완주군의 부동산등기 신청건수는 2024년 연간 5만 883건, 일 평균 207건으로 관할인구수가 비슷한 칠곡군, 영주시, 영천시와 비교하여 높은 편임.

다만, 법원행정처는 완주군법원 신설 시 완주등기소 설치 필요성이 긍정된다고 보면서도, 완주군을 포함하여 전주 지역 내 등기소

5) 법원행정처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시·군법원에 등기소를 반드시 함께 설치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시·군법원에는 항상 등기소가 함께 설치되어 왔으며, 시·군법원에 설치되는 등기소는 분산된 등기소를 하나의 광역등기소로 통합하여 인력과 물적 설비를 집중하는 등기소 광역화 사업의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음.

광역화가 이미 완료된 점, 등기업무 전산화로 등기소 직접 방문 필요성이 감소한 점, 완주등기소의 등기서비스 질이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 낮을 수 있는 점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등기 신청건수 비교>

법원·등기소	관할인구	등기 신청건수	일 평균 접수건수
칠곡군	107,383	42,133	171
완주군	99,279	50,883	207
영주시	98,870	41,582	169
영천시	98,143	49,142	200
평균	100,919	45,935	187

다. 검토의견

- 「법원조직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방법원 지원 및 가정법원 지원 외에 시·군법원(시법원 또는 군법원)을 둘 수 있음.

시·군법원은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심판사건, 협의이혼사건 등을 관할하고 있으며(법 제34조), 시·군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은 「법원조직법」 [별표 2] 및 [별표 7]에 규정되어 있고, 현재(2024. 12. 31. 기준) 전국에 설치된 시·군법원은 총 99개임.

법원조직법

제2조(설치) ②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한다.

제3조(법원의 종류) ②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支院)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7.>

5. 각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제34조(시·군법원의 관할) ① 시·군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할한다.

1.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2. 화해·독촉 및 조정(調停)에 관한 사건
 3.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건이 불복신청으로 제1심법원에 계속(係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사건은 그 시·군법원에서 관할한다.
-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한다.

- 개정안은 전북 완주군에 완주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완주군법원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완주군법원을 신설하게 되면, 현재 전주지방법원 본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건 중 완주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액 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 시·군법원 관할사건은 완주군법원에서 담당하게 됨.
- 완주군법원의 설치는 ① 완주군법원의 관할인구 및 사건 수 규모의 적정성, ② 완주군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 현황과 개선의 정도, ③ 시·군법원 설치를 희망하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④ 조직 신설에 따라 수반되는 재정부담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완주군법원의 관할인구(9만 9,279명)는 99개 시·군법원 중 26위 내지 28위에 해당하는 칠곡군법원, 영주시법원, 영천시법원과 유사한 수준이며(참고자료 2. 시·군법원 관할인구 현황 참조), 완주군법원이 설치(완주군청 인근 부지 설치 가정)되면, 완주군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완주군청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현재 완주군청보다 전주지방법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경우 사법 접근성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는 점, 완주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 비해 낮을

수 있는 점⁶⁾, 최근 지방시대위원회가 ‘전주시·완주군 통합 건의에 대한 검토(안)’을 의결(2025. 4. 2.)⁷⁾하는 등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또한, 개정안은 완주군법원 설치 시행일을 2029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당수의 경우 신규 법원의 개원일은 법관의 인사이동 일정 등을 고려하여 3월 1일로 규정하였던 점(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2026년 3월 1일, 인천고등법원 2028년 3월 1일, 세종지방법원 2031년 3월 1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개정안의 완주군법원 설치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98억 8,000만원(연평균 19억 7,600만원)으로 추정됨. 이는 완주군법원의 공무원 정원은 4명으로 하되, 전주지방법원 공무원 중 4명이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공무원 증원 없이 완주군법원 및 등기소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만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한 것임(참고자료 1. 비용추계 결과 참조).

6) 전주지법 등기과에는 민원상담관, 등기민원상담위원 각 1명이 배치되어 있고, 청사 내 현장민원실, 은행 등이 설치되어 있어 방문민원인이 상담, 신청서류 작성 및 접수, 각종 대장 및 주민등록 등·초본 등 첨부서류 발급, 취·등록세 납부 등을 일괄처리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7) 지방시대위원회 보도자료, 「2025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안, 전주시·완주군 통합건의안 검토안 의결」, 2025. 4. 3.

라. 관계기관 의견

- 법원행정처는 완주군은 전북특별자치도 14개 행정구역 중 유일하게 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완주군법원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의 시법원 관할 사건에 대한 사법접근성이 일부 강화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나,

완주군 인구의 약 60%가 밀집되어 있는 봉동읍, 삼례읍 일대 주민들의 사법접근성은 향상되는 반면, 전주시를 부채 모양으로 감싸며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완주군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일부 지역(이서면, 구이면)의 경우 사법접근성이 다소 약화되며, 완주등기소 설치 시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 비해 지역주민에 대한 등기서비스의 질이 다소 떨어질 우려가 있는 사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71

참고자료 1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전주가정법원과 완주군법원을 신설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64억 2,800만원, 2031년 16억 2,4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78억 6,700만원(연평균 75억 7,300만원)으로 추계

[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계	연평균
전주가정법원 등의 신설	11,444	11,744	1,588	1,586	1,624	27,986	5,597
완주군법원 신설	4,983	4,897	-	-	-	9,880	1,976
합계	16,428	16,641	1,588	1,586	1,624	37,867	7,573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전주가정법원, 완주군법원을 신설하고, 전주지방법원 및 전주가정법원 소속 군산지원·정읍지원 및 남원지원 은 현행 ‘전주지방법원’ 소속 군산지원·정읍지원 및 남원지원에서 가사사건 등을 담당하는 인력을 승계하고 기존 사무실을 재배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에서 제외하기로 함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전주가정법원과 완주군법원 청사 신축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 공사비와 부대경비, 20명의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전주가정법원의 공무원 정원은 35명이고 현행 전주지방법원 공무원 중 15명이 승계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개정안에 따라 20명의 공무원 증원 필요
 - 완주군법원의 경우, 공무원 정원은 4명이고 현행 전주지방법원 공무원 중 4명이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증원은 없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 부칙에 따라 2029년 1월부터 전주가정법원과 완주군법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2027년에 토지를 매입하고 2028년까지 2년 동안 신축하는 것으로 가정

참고자료 2

시·군법원 관할인구 수 현황

(2024. 12. 31. 통계청 인구 기준)

순위	시·군법원	인구(명)
1	오산시법원	1,210,886
2	용인시법원	1,085,864
3	광주시법원	726,725
4	김해시법원	531,676
5	파주시법원	511,308
6	김포시법원	486,853
7	구미시법원	404,820
8	세종특별자치시법원	390,685
9	양산시법원	359,531
10	아산시법원	355,014
11	광명시법원	278,167
12	익산시법원	268,001
13	여주시법원	267,816
14	경산시법원	266,398
15	거제시법원	232,972
16	이천시법원	222,443
17	안성시법원	193,949
18	창원남부시법원	188,739
19	서귀포시법원	182,020
20	당진시법원	171,931
21	광양시법원	154,692
22	포천시법원	141,463
23	양평군법원	126,804
24	나주시법원	116,654
25	사천시법원	108,504
26	칠곡군법원	107,383
27	영주시법원	98,870
28	영천시법원	98,143
29	보령시법원	93,780
30	무안군법원	92,687
31	음성군법원	91,236
32	동해시법원	87,675
33	동두천시법원	86,838
34	진천군법원	86,537
35	김제시법원	80,635
36	예산군법원	78,772
37	괴산군법원	73,423
38	강화군법원	69,402
39	문경시법원	67,257
40	홍천군법원	66,717
41	가평군법원	62,527
42	삼척시법원	61,735
43	화순군법원	60,735
44	고흥군법원	60,190
45	태안군법원	60,133
46	부여군법원	59,550
47	함안군법원	58,842
48	창녕군법원	56,085
49	예천군법원	54,609
50	영광군법원	52,098

순위	시군법원	인구
51	영암군법원	51,391
52	고창군법원	50,982
53	금산군법원	49,615
54	서천군법원	48,204
55	옥천군법원	48,204
56	부안군법원	48,066
57	고성군법원(경남)	48,005
58	울진군법원	46,124
59	횡성군법원	46,111
60	완도군법원	45,631
61	담양군법원	44,623
62	장성군법원	42,026
63	성주군법원	41,452
64	연천군법원	40,866
65	하동군법원	40,765
66	청도군법원	40,582
67	철원군법원	40,497
68	평창군법원	40,396
69	합천군법원	40,225
70	남해군법원	39,832
71	태백시법원	37,936
72	보성군법원	37,045
73	함양군법원	36,131
74	정선군법원	33,515
75	산청군법원	33,259
76	강진군법원	32,189
77	인제군법원	31,535
78	보은군법원	30,527
79	고령군법원	30,062
80	함평군법원	30,010
81	청양군법원	29,658
82	봉화군법원	28,836
83	진도군법원	28,478
84	양양군법원	27,489
85	단양군법원	27,352
86	고성군법원(강원)	26,999
87	순창군법원	26,822
88	곡성군법원	26,566
89	임실군법원	25,577
90	의령군법원	25,150
91	진안군법원	24,161
92	구례군법원	24,025
93	청송군법원	23,716
94	무주군법원	23,032
95	화천군법원	22,922
96	군위군법원	22,463
97	장수군법원	20,663
98	양구군법원	20,621
99	영양군법원	15,328